



월간 2026년 8월호 2026. 8. 28.

건설법제동향

법 률

- 이슈 1 :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 이슈 2 : 건설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 사례

법 령

-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준 강화
-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확정 및 위반 제재 정비
-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자연재난 구조안전 점검 강화
-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강화
- 하자보수 제외 공종 명문화 및 업계 부담 완화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 최근 한 달(7.27.~8.26.) 동안 국회에서는 총 655건의 법률안이 새롭게 제안되었으며, 이는 통상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 이는 여당의 경우 전당대회 일정이 있었으며, 패스트트랙 단축법, 필리버스터 제한, 부동산 공급 입법, 선관위 특검·국정조사, 개헌론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여러 주요 이슈에 대한 충돌과 함께 동 기간 5회에 걸친 본회의 개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 등이 숨 가쁘게 이어져 입법이 통상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허나 건설산업 관련 주요 유관 입법은 예년에 비해 많은 69개의 법안이 새롭게 발의됨. 다만, 주요 산업 정책 변화 또는 규제와 관련한 입법보다는 과세특례 제한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춘 간접적 산업 지원책과 관련한 입법이 다수를 이룸.

이슈 1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 이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376호)은 ①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②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한 입법안임.
 -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은 답보상태인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으로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등으로 재원 창구 확대를 규정함.
 -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의 의무 부여를 위해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액의 1,000분의 5(5%)를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함.
- [법 개정에 따른 실익]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미적립되었던 성능개선 충당금의 기준 명시를 통해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음에도 2025년 10월까지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곳은 7개 기관(0.6%)에 불과하며, 충당금을 적립한 관리주체는 1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25년)에 불과한 상황임.¹⁾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능개선 충당금은 연간 약 5,270억 원[보통세 3년(2021~23) 평균] + α (전입금 등)이 적립되어 부족하나마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기대됨.
- [법안의 한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립을 구체화하고 여타의 자금을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그 외 관리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와 구체적인 이전 재원에 대한 기준 설정이 결여되어 있어 여러 관리주체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응 한계는 지속 상존할 수밖에 없음.
 - (관리주체 비형평성)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국가기관 33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19개, 지방공기업 12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지방자치단체만 보통세 3년 평균의 5%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관리주체의 충당금 미적립·부족 적립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제한적 노후 인프라 급증 대응) 기반시설 관리 소요 비용은 2021년 기준 향후 30년인 2050년까지 약 1,0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²⁾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재원의 미지정(하위 법령 위임 포함)으로 상대적 재난관리기금과 같은 여유가 있는 유사 재원으로부터의 자원 이전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자원 명시가 필요함.
- 그러나 상기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법 제정 이후 실질적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핵심 사항인 자원 마련이 그간 오랫동안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이를 해결코자 하는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입법 속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 공론화를 비롯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함.

이슈 2 | 건설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상생협력법 개정안 사례

- 건설산업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

1)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작성('25.10.1.) 참조
 2) 국토교통부(2022),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 수립 연구.

조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음. 이 구조는 위험(비용·안전)의 하향 전가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행정·입법부는 오랫동안 ‘규제 강화’를 통해 이를 통제하려 해옴.

- 특히, 2022년 광주 화정 붕괴 이후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는 급격히 강화되는 국면에 진입했고 2025년 출범한 현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기조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 허나, 규제의 총량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규제 준수비용 급증·중복규제·원·하도급 간 갈등·법 해석 혼란·회피 행동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표 1〉 최근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 동향(2022년 ~ 현재, 일부)

규제 법령	주요 신설·강화 내용	시행일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연동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 협의비율(10% 이내) 이상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화, 연동·미연동계약서 작성 의무	2023.10.4. 시행, 2026.8.11. 에너지비용 포함
하도급법 (기술유용)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3배 → 5배 상향, 손해액 추정 규정 신설(제35조의6)	2024.8.28. 시행
하도급법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에도 원도급자 지급보증 의무화(예외 폐지, 1천만 원 이하 소액 제외)	2026.8.11. 시행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연동계약서 의무, 부당특약 무효, 산재예방 조항)	2024.12.24.
건설산업기본법 (불법하도급 처벌)	무자격 하도급 시 원도급 영업정지 4~8개월 → 8개월~1년 과징금 하도급대금 4~30% → 24~30%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1~8개월 → 8개월~2년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 폐지	2026.6.23.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대금지급)	공공공사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항목별 세분화 (하도급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구분)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국토부 이관)	2022.1.28. 시행규칙, 차세대 시스템 2028년 시범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50인 미만(건설 50억 원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2024.1.27. 확대 적용

-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 찬성·지지 측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산재·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이며,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려면 원청 책임 강화(규제 신설·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실제 2025년 관계 부처 합동단속에서 원도급자 적발 비중이 62.7%(2023년)에서 25.5%로 감소한 반면, 하도급자 비중은 34.7% → 74.7%로 증가해 원도급자의 준법 인식이 일부 개선된 정황도 확인됨.

- 허나, 무등록·무자격 하도급(141건)·재하도급(121건) 등 구조적 유형은 반복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적발률 급락에도 여전히 문제는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임금체불은 감소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 원 → 2024년 4,657억 원 → 2025년 4,028억 원으로 3년 연속 4천억 원을 넘어서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강화가 임금체불 해소로 직결되지 못하였음.
- 뿐만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은 개별 건설 노무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팀장·십장 등의 품폐기·물량폐기가 빈번함에도 현행 법률 체계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이를 하도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도급자의 직고용 인력만을 허용하고 있기에 그 과정 내 불법하도급 판단기준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고 법원 판례(대구지법 2025.4.17. 선고 2024구합20996³⁾ 등)를 통해 규제가 이해되는 사례와 같이 건설하도급 규제의 복잡성에 따른 제도 인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실증 사례를 고려할 때 ‘규제 총량을 늘리면 위법이 줄어든다’라는 단선적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규제 피로, 준수비용 급증, 회피 행동(계약형식 위장 등)이 규제 강화의 한계효용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 속 이달 국회에서는 건설하도급을 직접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이 아닌 타 법 일부개정 사항이긴 하나, 원·하도급(위·수탁) 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의 대등한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강화가 아닌 인센티브 촉진 중심 입법안이 2건이나 제시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최수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5호)에서는 규제와 의무 강제가 아닌 확실한 인센티브를 법률로써 보장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대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실리적 우대 패키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2호)의 경우 현행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0.15~0.5%)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 기한 단

3) 팀장이 일용노동자들을 데려와 일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원은 공사 비용을 원고(업체)가 직접 지출했고, 모든 인부의 4대 보험료도 원고가 부담했으며, 팀장이 제출한 기성현황표에 노무비·경비·성과금만 있고 공정률 기준 대금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된 돈은 하도급대금·기성고가 아니라 노무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법하도급 부정. 즉, 겉보기에 동일한 ‘팀 단위 시공’ 형태라도 대가 산정 방식(공정률 기준 vs. 인원·단가 기준)에 따라 하도급과 노무계약이 결정.

촉 유도를 위해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율을 현행 대비 최소 2배 이상인 1.0%로 상향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 규제 일변도 정책은 준수 비용 급증·회피 행동·규제 피로를 유발하는 데 반해, 인센티브형 접근은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고, 우수기업에 시장·조달·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준법이 곧 경쟁력’이 되는 유인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은 해외의 경우 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지난 2024년부터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을 규율하던 ‘Prompt Payment Code’를 대체하여 ‘Fair Payment Code’⁴⁾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단축·준수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의 자발적 규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 시 공공조달 입찰에서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접근 방식임.
 - 미국 또한 연방 「Prompt Payment Act」와 CPARS(계약이행 평가)로 우수한 원도급자를 평가·우대⁵⁾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획(Subcontracting Plan)을 통해 하도급 상생을 유도하고 있음.
 - 물론 우리나라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체 하도급 거래 중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하는 제도 운용과 더불어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위원회 종합평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50:50 합산) 최우수·우수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 면제, 공공입찰 PQ 가점,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원도급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 우대 패키지라 보기는 어려움.
- 이를 고려할 때 이미 건설하도급 규제 총량은 임계에 달하였고,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처벌 중심 접근이 잦은 행정 소송과 현장 혼란으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함과 더불어 여러 실증 사례 또한 규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최소 안전판)와 인센티브(자율 상생 유도)를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임.
- 이번 「상생협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정부와 국회는 향후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신설 이전 동일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공공조달 가점·세제·금융 지원·평가인증 연계 등 구체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촉진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하도급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길 희망함.

4) 2024년 12월 도입된 소상공인위원회(OSBC) 운영의 자발적 대금지급 인증제로, 하도급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기업에 Gold(30일 내 95% 지급)·Silver(60일 내 95%, 소기업은 30일 내 95%)·Bronze(60일 내 95%)의 3단계 등급을 2년 유효 인증으로 부여함으로써 처벌이 아닌 평판·조달상 이점을 유인으로 공정한 지급문화를 촉진하는 인센티브형 제도.

5) CPARS(Contractor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을 통해 원도급자의 계약이행 실적(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시성, 중소기업 하도급계획 이행도 등)을 등급(Exceptional-Unsatisfactory)으로 기록·축적하고 이를 이후 연방계약 낙찰자 선정 시 과거 실적 평가 요소로 반영함으로써 하도급 상생 실적이 우수한 원도급자일수록 향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유인구조를 운영 중.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6.7.27~8.26.)

※ **규제 또는 처벌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165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6.7.27.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부동산 통계·지표·전망 정보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제안이유)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제기 ▪ 특히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안 제23조의2 신설)
「자연재해 대책법」	• [의안번호: 제20167호(조지연 의원 등 12인)] ('26.7.27. 일부개정 발의) ◆ [요약] 폭염 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자체 간 역할·이행 체계가 불명확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과 달리 폭염피해저감시설에 대한 개념 및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 인식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신설·개정 - (제안이유①)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이유②)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 한계 노출 - (제안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과 더불어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 [의안번호: 제20176호(장철민 의원 등 11인)] ('26.7.27. 전부개정 발의) ◆ [요약]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로 제조업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현행법만으로는 제조

법률명	주요 내용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인공지능 전환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안 제9조), 제조현장 암묵지데이터의 수집·활용(안 제12조),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 기업 지정(안 제13조),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17조~제20조), 산업 인공지능제품의 실증 기반시설 구축과 성능인증·시정조치(안 제23조·제26조제28조),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등급별 보안 조치(안 제34조·제35조)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안 - (제안이유)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생산기술,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등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제조·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할을 결집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현행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제조현장의 숙련지식과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 내포 - (제안방향)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 마련 - 이를 통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인력·데이터·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안 제명) ▪ 법률의 목적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1조) ▪ 산업인공지능전환, 산업인공지능제품,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및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산업인공지능전환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가 얼라이언스의 운영, 선도사업 지원,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산업인공지능제품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 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및 지식 등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및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국가·경제안보,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업인

법률명	주요 내용
	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안 제20조) ▪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시험·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및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등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취소와 제작 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조성 및 기업의 데이터센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3조) ▪ 산업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집적·활용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거나 데이터 가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 ▪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를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 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보안 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35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210호(김남준 의원 등 10인)] ('26.7.2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GTX)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안 제16조의2 신설), 그 대신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상향(안 제25조제1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GTX)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역사에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를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개정(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211호(김남준 의원 등 11인)] ('26.7.2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 가액에서 신규 건설 국방·군사시설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 -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의2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의안번호: 제20213호(김남준 의원 등 11인)] ('26.7.2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허가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 - (제안방향)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신설)
「공항 시설법」	• [의안번호: 제20214호(김남준 의원 등 11인)] ('26.7.2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재산권 제한 등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안 제35조제3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 -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35조제3항)
「건설기계 관리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20230호(윤정균 의원 등 13인)] ('26.7.2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건설 현장에서 국가 인증제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 연식과 조종사 연령을 임의로 제한하는 관행이 건설원가 상승과 임대사업자·고령 조종사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22조의3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등) -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법률명	주요 내용
	는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중 - 현행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 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 - 그럼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사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 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안 제22조의3 신설) -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등)
「하도급법」 규제 강화	[의안번호: 제20251호(정무위원장 대안)] ('26.7.29. 일부개정 발의) [요약]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을 돕기 위해 자료제출명령·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비밀유지명령 규정을 「공정거래법」 준용 방식으로 정비하고(제35조의2~제35조의5 삭제 등), 처분시효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된 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에서 제외(안 제22조제4항제1호 등) (제안이유·방향①) 원도급자의 현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 - 기술유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하도급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 도모 (제안이유·방향②)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면서,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일 해석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로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방향③) 신고 이후 당사자 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 (안 제22조제4항제1호, 제29조, 제35조제4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삭제)
「국가기간	[의안번호: 제20261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 ('26.7.29.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요약]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재무·인력 한계로 급증하는 전력망 확충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도록 하는 BT 방식을 도입하고(안 제3조제2항~제4항 신설),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 -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필요 - (제안방향①)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규정(BT방식) - (제안방향②)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269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6.7.2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철도지하화 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철도지하화사업 범위에 인공지반 조성사업을 포함하고(안 제2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5조의2 신설), 기본계획 고시 시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고(안 제8조제3항),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 비용부담 원칙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하고(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①)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 포함(안 제2조) - (제안방향②)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③)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제3항) - (제안방향④)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 추가(안 제9조제1항) - (제안방향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제2항) - (제안방향⑥)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안 제13조) - (제안방향⑦)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항만	• [의안번호: 제20284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26.7.29.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이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난개발과 공공성 악화, 인·허가 의제 누락 등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의 정의·범위에 '상부시설'을 포함하여 입체적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안 제2조·제9조·제17조), 공사 완료 시 사업구역 지정 해제 근거와 「항만법」상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를 신설하며(안 제13조·제19조), 준공검사 절차 강화 및 준공 전 사용을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고(안 제35조),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해 무상귀속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안 제37조), 사용·처분시행계획 제출 의무와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과태료 근거 마련(안 제38조·제39조·제49조)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 조성 등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난개발 및 공공성 악화,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또한 「항만법」 분법 과정에서 일부 인·허가 의제 사항이 누락되고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불확실성, 사업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불편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온 상황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상부시설'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사용 및 처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안 제9조 및 제17조) ▪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시 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 ▪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안 제19조) ▪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인수·관리기관의 검사 참여 요청 권한을 신설하며 준공 전 사용 요건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안 제35조) ▪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안 제37조) ▪ 취득한 조성토지 등을 사용·처분하려는 경우 사용·처분시행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안 제38조 및 제39조) ▪ 환지 관련 표지 훼손이나 통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9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292호(과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 절실함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가 사업 추진을 지연·무산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 중 - 하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안 제5조)
「도로법」	• [의안번호: 제20293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도로 개설·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6조제4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 존재 - (제안방향)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6조제4항)
「하수도법」	• [의안번호: 제20294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역에서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개선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고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63조) -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제안방향)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6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295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체육시설 설치가 주민 건강 유지와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성화할 특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개정(안 제35조제1항후단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 가능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개정(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지방재정법」	• [의안번호: 제20296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교통·의료 등 생활환경 기반 조성이 시급함에도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로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교통·교육·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도시가스 사업법」	• [의안번호: 제20297호(곽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 -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304호(민병덕 의원 등 13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90년대 초 PC공법으로 건설된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이 접합부 균열·누수·철근부식 등 일반 노후 공동주택과 구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에도 현행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정비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에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안 제26조제2항) - (제안이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초 대량 주택공급 과정에서 건설된 PC(PreCast Concrete) 공법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일반 노후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부재 간 접합부의 균열, 누수, 철근부식, 배관 노후, 층간소음, 외벽 손상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PC공법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수성과 재생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일반적인 노후 공동주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접합부 중심의 구조 위해성, 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 구조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 내포 ▪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정책은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로는 구조적 위험이 큰 PC공법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장기간 누수, 배관 파열, 외벽 탈락, 소음 피해 등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가능성이 큰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안 제26조제2항)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의안번호: 제20311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함에도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로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기에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 내포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개정(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주차장법」	• [의안번호: 제20312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주차장 여건 개선을 통한 방문객 유입 촉진이 필요함에도 현행 재정지원 근거가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지원 특례가 없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안 제21조제4항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4항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313호(광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공원추진자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녹지의 설치·관리비용과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법률명	주요 내용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의안번호: 제20322호(곽규택 의원 등 15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구감소지역은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부지 확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없어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기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중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329호(복가왕·엄태영 의원 등 17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산거점의 신속한 조성이 필요함에도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는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어 토지 확보가 지연되기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정 이전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안 제6조제9항 신설), 토지 등의 협의취득·사용을 허용하되(안 제25조제3항 신설), 귀책사유 없는 손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와 조기 협의 시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제5항~제7항 신설) -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 중 -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정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장기화되어 급변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제안방향)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및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 - 제도 안정성 확보 차원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로서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제9항 신설) ▪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3항 신설) ▪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5항 신설) ▪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의를 유도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협의에 응한 경우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334호(강득구 의원 등 10인)] ('26.7.3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정·변경·철회 절차가 불명확하고, 전국 단일 기준일 방식의 현물보상 제한으로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까지 배제된다는 문제인식에서, 후보지의 선정·변경·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안 제41조제4항~제6항 신설),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안 제55조의3, 법률 제18313호 부칙 제2조 삭제), 무주택 실수요자·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과 투기적 지분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안 제44조의2 신설) 등을 마련 - (제안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혁신지구로서, 실무상 지구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후보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정·변경·철회의 절차가 불명확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또한 현행 제도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 이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현물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전국 단일 기준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그 이후 새로 발표되는 후보지에서 투기와 무관하게 토지 등을 취득한 실수요자까지 현물보상에서 배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나 전세사기피해자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큰 취득자에 대한 예외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 - 한편, 유사한 제도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후보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구역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한 바 있어, 같은 문제 상황에 놓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 도모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변경·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 마련 ▪ 주거재생혁신지구 또는 그 후보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정의(안 제2조제1항제6호의4 신설)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며,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후보지 선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 공람·공청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도록 하며, 혁신지구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철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의무화(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변경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를 초과하는 자가 반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반려(안 제41조제9항 신설)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반도록 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반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인 또는 확인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토록 규정(안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 ▪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취득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개정(안 제55조의2제5항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 현물보상은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하도록 하되,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이혼·신탁계약 또는 그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 등은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것으로 인정(안 제55조의3제1항) - 현물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의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필지 분할, 다세대주택 전환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 현물보상 기준 공고일부터 일주일까지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5조의3제3항 신설) -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일까지로 하고, 예외적 현물보상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임차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안 제55조의3제4항 및 제6항) - 국가시범지구에 대해 후보지의 선정·철회, 지정·변경 요청의 반려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안 제56조제4항) -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는 현물보상 제한 특례 폐지(법률 제18313호 부칙 제2조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 [의안번호: 제20340호(송옥주 의원 등 10인)] ('26.7.31.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안이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안 제9조 및 제10조)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	• [의안번호: 제20376호(안태준 의원 등 11인)] ('26.8.3. 일부개정 발의) ◆ [요약] 70~80년대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성능개선 총당금의 최저 적립기준이 불명확하고 재원 조달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기에 성능개선 총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안정적·장기적 재원 확보 기반 강화(안 제23조제1항·제2항 후단, 제3항제4호·제5호, 제6항 신설 등) - (제안이유)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은 관리주체별 총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능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 성능개선 총당금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총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제3항제4호·제5호, 제4항, 제6항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	• [의안번호: 제20379호(이종욱 의원 등 10인)] ('26.8.3.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 [요약]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큼에도 현행 점검 제도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장·창고·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용도·규모·건축자재·구조·피난방화시설 등을 종합 평가한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그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 - 특히,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관리하는데 한계 노출 - (제안방향)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공장·창고·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 [의안번호: 제20386호(장종태 의원 등 10인)] ('26.8.3.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영역의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상 통합발주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영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영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중이나, -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영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영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영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 - (제안방향)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영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 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432호(박화승 의원 등 10인)] ('26.8.4. 법률제정 발의) ♦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새만금 등 서남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장거리 송전망 확충 비용과 지역 갈등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정주시설·송배전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조성하여 자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안 제10조·제12조·제16조~제29조), 발전설비 입지 시·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안 제13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와 계통 우선접속·이용요금 감면,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대 및 영농형 태양광 지원,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채투자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안 제30조~제38조, 제78조~제80조 등)하는 특별법 제정안 -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 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

법률명	주요 내용
	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입지 특성상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 등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 ▪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가 확정된 준비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 도모 - (제안방향②)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개선 ▪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지역과의 이익공유를 통한 균형발전을 법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가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정의(안 제2조제9호) ▪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의결(안 제6조 및 제7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으로 기반시설 구축 실적, 국가시범산업단지 등 지정 이력, 투자가 확약된 기업의 유치 실적과 물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및 제12조) ▪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하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안 제13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의제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에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되,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계통 연계 허용 의무, 주민참여 발전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 송·배전 이용요금 감면 등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우선 전력거래 등을 지원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 조세·부담금 감면, 기술개발·인력양성, 보육·교육·의료 분야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등 지원사항 규정(안 제47조부터 제64조까지)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출에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주민지원사업 비용 포함(안 제85조부터 제86조까지)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우선 지정과 기존 계획·전력구매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440호(김용태 의원 등 11인)] ('26.8.5.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없는 공장이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 해소를 위해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 소화기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 강화	구·자동소화장치·옥외소화전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제안방향)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과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20442호(김재섭 의원 등 11인)] ('26.8.5. 일부개정 발의) ♦ [요약]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재 위험이 큰 소규모 현장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보조·지원 대상 선정 시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선정방법·중복지원 방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사업자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보조·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제안방향)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 지원 제도의 형평성·실효성 향상을 위해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건축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443호(김용태 의원 등 10인)] ('26.8.5.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가설건축물이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되어 샌드위치 판넬·천막 등 가연성 재료가 사용됨에 따라 화재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개정(안 제20조 및 제52조)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 중 -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

법률명	주요 내용
	(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실정 - (제안방향)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자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0조 및 제52조)
「상생 협력법」	• [의안번호: 제20445호(최수진 의원 등 11인)] ('26.8.5.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영세 중소기업이 단가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대기업에 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 방식은 갈등의 사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우대,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0조의4 신설 등) -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더라도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처인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단가 협상에 적기 반영하지 못해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화되는 실정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집단 협상력을 확보하고, 원가 변동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통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 -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협의 의무를 강제하고 거부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재계의 강한 마찰열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국내 소부장 조달 축소 및 수입선 다변화 등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을 우려 상존 ▪ 이러한 '채찍' 위주의 강제 조항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사법적 소송전이나 대형 로펌을 통한 장기 회피 대응을 유발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장기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고사하는 '갈등의 사법화' 장벽 초래 가능 - (제안방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및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하는 대기업(원사업자)에 대해 확실한 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즉, 규제와 의무 강제가 아닌 확실한 인센티브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대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실리적 우대 패키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친화적인 자율적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파트너십과 양질의 국내 공급망 안보 확립 유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의안번호: 제20455호(황희 의원 등 10인)] ('26.8.5.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높은 분담금과 사업성 저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공간형 주택개발이 사업성 제고와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건설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안 제49조의4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중 -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 (제안방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안 제49조의4 신설 등)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490호(복기왕 의원 등 21인)] ('26.8.7. 법률제정 발의) ♦ [요약] 국가 청사 관리가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해 지자체가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고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기존 제도가 신축·증축 등 건립 단계에만 치중해 있다는 판단 아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와 다차원 성능 진단을 명문화한 전 생애주기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로 전환하고, 현대 행정 수요를 반영한 면적 규제 보완 및 사전 기획 절차 제도화를 통해 공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청사 관리 관련 법률 제정 - (제안이유)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청사 관리의 체계가 이원화된 상황 - (제안방향) 국가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과 규범력을 확보하여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 (방향①) 기존 제도는 신축·증축 등 초기 '건립 단계'만 다루고 있어, 준공 후 수십 년간 발생하는 노후 청사의 유지보수, 성능 개선, 생애주기 비용최적화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기에 급격한 청사 노후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와 다차원 성능 진단을 명문화하고, 국가 예산 및 지방 재정 집행의 중장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방정비 중심의 자산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며 그 방안으로 전 생애주기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방향②) 행정 구조의 다변화, 생활인구의 유입, 방재·보안 기능의 강화 등 현대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규제를 보완하고, 실제 유입 수요와 행정 기능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사전 기획 절차를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기획 제도를 도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의안번호: 제20492호(김종양 의원 등 11인)] ('26.8.7.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철거·수리를 유도할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의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 유인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시행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하여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 철거 또는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군수가 해당 사업을 통해 빈

법률명	주요 내용
	집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 (제안방향)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건축법」	• [의안번호: 제20493호(황희 의원 등 10인)] ('26.8.7.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구조체에 매립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유지보수·구조변경이 어려운 탓에 30년 주기의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투기 수요와 주택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가변성과 유지보수·설비 교체의 용이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하고 그 건축을 촉진하도록 하는(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의4 신설) 개정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 -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들은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철골구조에 비하여 구조변경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이 어려운 측면 존재 - 이로 인해 30년 주기로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야기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사 등 간의 고착화된 카르텔 형성을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20512호(임종득 의원 등 10인)] ('26.8.10.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이 장기간 방치·노후화되어 빈집 확대와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지·관리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기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하는 개정안 -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 - (제안방향)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 [의안번호: 제20530호(김의겸 의원 등 14인)] ('26.8.10. 법률제정 발의) ◆ [요약]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현행 제도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6조)과 국무총리 소

법률명	주요 내용
관한 특별법	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안 제7조), 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공동 지정 및 지정요건·절차(안 제10조~제13조), 개별방식·사업시행자 선정·실시계획 승인 등 조성 절차(안 제15조~제28조), 전력 공급 및 계통연계(안 제29조~제34조),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특례(안 제44조~제61조), 입주계약 등 관리(안 제62조~제71조)와 특별회계 설치(안 제72조)를 규정하는 특별법 -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중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안 제6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안 제7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전력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보육·교육·의료 분야 관련 특례 등을 마련(안 제44조부터 제61조까지) ▪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권자, 관리기관, 입주계약, 입주계약의 해지, 건축물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2조부터 제71조까지) ▪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 가능(안 제72조)
「산업안전 보건법」	• [의안번호: 제20555호(이한승 의원 등 12인)] ('26.8.12.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도급 관계에서는 안전보건 이행 권한이 도급사업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으로는 실질적 운영이 어렵기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도급인·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안 제24조제1항) 개정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중

법률명	주요 내용
	-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안 제24조제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560호(한병도 의원 등 10인)] ('26.8.12.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새만금사업지역의 기업 투자 현실화와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안 제8조의2), 통합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구체화하며(안 제11조의2·제33조),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 양여 특례(안 제44조의2 신설)와 산업단지 관리·감독 권한(안 제52조의2),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택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특례(안 제52조의5 신설, 제59조 삭제), 새만금청장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설치 특례(안 제69조의3 신설)를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초·중고 설치 사무를 새만금청장 사무에서 삭제하는(안 제70조) 개정안 -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또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제안방향)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 추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실시계획·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사업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안 제8조의2) ▪ (통합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를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화(안 제11조의2) ▪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안 제33조) ▪ (공공시설 무상 양여 특례 신설)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 (산업단지 관리 권한 확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2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은 삭제하여 제52조의5에 통합적으로 규율(안 제52조의5 신설, 제59조 삭제) ▪ (경관계획 특례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경관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9조의3 신설) ▪ (새만금청장의 사무 범위 조정)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를 새만금청장이

법률명	주요 내용
	수행하는 사무에서 삭제(안 제70조) ▪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근거 마련)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의 범위에 「주택법」 제18조를 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564호(김정재 의원 등 11인)] ('26.8.13.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근에 이미 충분한 공원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확보 의무가 부과되어 효율적 개발과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계획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그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방안 - (제안이유)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됨 -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둬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의안번호: 제20166호(김정재 의원 등 10인)] ('26.8.13.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민간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공공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성 보장 특례가 미흡하다는 한계 해소를 위해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은 이에 상응해 1.3배로 상향하는 한편, 민간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하는(안 제54조제1항 등) 개정안 - (제안이유) 도심 내 재정비·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 -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방식으로 사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 - (제안방향)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안 제54조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20569호(윤후덕 의원 등 13인)] ('26.8.13. 일부개정 발의) ♦ [요약] 토지가격·건설비 상승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현행 10퍼센트 감면율로는 민간의 자발적 토지 공급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 해결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설정(안 제97조의10) -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적절한 입지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원활

법률명	주요 내용
	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과 공급 확대의 중요한 전제 - 관련하여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감면 중 - 그러나 토지가격과 건설비 상승 등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퍼센트의 감면율만으로는 민간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토지 공급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 - (제안방향)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 유도(안 제97조의10)
「지방세 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20573호(안철수 의원 등 10인)] ('26.8.13.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청년 대상 별도 우대 제도가 없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6억 원(수도권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천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되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용도변경 시 추징하도록 하는(안 제36조의6 신설 등) 개정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하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택 구입 시 계약금과 잔금 외에 취득세까지 일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청년의 주택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행 감면 한도만으로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 - (제안방향)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 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 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안 제36조의6 신설 등)
「조세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20582호(윤후덕 의원 등 11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수도권 주택을 장기 보유·거주한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가 세 부담 등으로 저해되고 있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 (제안이유)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 ▪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지방 공기업법」	• [의안번호: 제20589호(박성훈 의원 등 11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사·공단 발주 계약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없어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고 발주기관별 제재가 달라진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과징금)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안 제64조의2제4항) -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 중 -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 - (제안방향)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과징금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안 제64조의2제4항)
「지방 공기업법」	• [의안번호: 제20596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사·지방공단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63조의9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 해임이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3조의9 신설 등)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597호(안태준 의원 등 11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의 장기화와 성장기에 형성된 경직적 계획체계가 시급한 전략사업 추진과 인구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민생안전 등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안 제16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토지 관리 및 생활인프라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면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제22조),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를 마련하고(안 제23조), 필요한 항목만 규정하는 간편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안 제52조)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이유·방향①)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할 우려 -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전 등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의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 지원(안 제16조) - (제안이유·방향②)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도모(안 제19조 및 제22조) - (제안이유·방향③)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는 미흡한 상황 - 이는 현행법 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인구 성장에 대응한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 -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직적인 도시·군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제기 -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 확보 유도(안 제23조) - (제안이유·방향④)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안 제5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603호(장종태 의원 등 14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하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의무와 확인·관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한계 해소를 위해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21조의4 신설 등) - (제안이유)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 중 -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 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 ▪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 확보 필요 - (제안방향)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1조의4 신설 등)
「건축법」	• [의안번호: 제20604호(장종태 의원 등 14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처벌 강화	♦ [요약] 공장·창고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됨에도 일부 업종의 공장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고 단열재에 대한 법률상 규율 근거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제재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안 제50조제3항 신설),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 단열재를 명시하며(안 제52조제7항 신설, 제52조의4),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높이를 115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하고(안 제52조의7 신설), 단열재 기준 위반 및 시험성적서 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안 제108조제1항제2호·제4호의2)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도록 규정 중 - 그러나 공장·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 - (제안방향) 공장·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 마련 ▪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적용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50조제3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52조제7항 신설)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에 단열재를 명시하고, 시험기관이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2조의7 신설) ▪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2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의안번호: 제20607호(박균택 의원 등 10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노후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는 안전 확보나 철거·재건축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근거가 없고 임차인의 귀책 없는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미비하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건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으로 자산가치·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신설하고(안 제10조제1항제7호 라목), 사용승인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의8), 해지·갱신 거절에 따른 영업손실·권리금·이전 비용 등의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안 제10조의10 신설)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안 제10조의5제3호 신설) 이를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는(부칙 제2조) 개정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중

법률명	주요 내용
	-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건물의 안전 확보나 철거·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노후 상가건물의 정비와 효율적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 ▪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영업손실, 권리금 및 이전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도 미비한 실정 - (제안방향①) 건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로 정비하고, 사용승인일 등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제안방향②) 철거·재건축을 위한 해지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계약해지 및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의 정비 및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 ▪ 건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신설(안 제10조제1항제7호라목) ▪ 임대차 종료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의5제3호 신설) ▪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수익성 저하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또한,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해지 통지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지 요건과 절차를 규정(안 제10조의8) ▪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손실, 권리금 및 이전비용 등의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도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안 제10조의10 신설) ▪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부칙 제2조)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법안」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608호(이해민·이주희 의원 등 21인)] ('26.8.14. 법률제정 발의) ♦ [요약]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지역 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기본사회 정책 수립 의무와 국민의 재교육·전직·최소생활 보장 권리(안 제5조·제7조), 전환지역 지정(안 제8조), 국가전략 및 5년 단위 기본계획(안 제9조~제12조), 산업전환 촉진 및 기업의 고용안정 조치·세제지원(안 제13조·제14조), 기본사회 지원금 설치와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감면(안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안 제23조)를 규정하는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관련 법률 제정안 -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구조 변화, 산업 간 격차 확대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될 가능성 - 이는 국민의 소비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업의 높아진 생산성을 수요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

법률명	주요 내용
	환 과정에서 기업의 전환을 전폭 지원하여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산업전환기적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 마련 필요 - (제안방향)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전환 과정에서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 유도 ▪ 국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연계한 정책을 마련토록 규정(안 제5조) ▪ 국민에게 직접 재교육, 전직·재취업 지원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 부여(안 제7조)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국가전략 및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생산·서비스 혁신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재교육·직무전환 계획 수립, 고용변동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 마련 등 고용안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불안 완화를 위해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 분담금,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규정(안 제16조) ▪ 정부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위해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조정 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시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 기금을 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안 제20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 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안 제21조)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범정부 정책 조정체계 마련(안 제23조) ※ 본 법률안은 이해민·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10호)의 의결 전제
「국가재정법」	• [의안번호: 제20609호(이해민·이주희 의원 등 21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설치 기금 목록에 추가하는 부수 개정(안 별표2 제72호 신설) - (제안이유·방향)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안 별표2 제72호 신설) ※ 본 법률안은 이해민·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 전제

법률명	주요 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 [의안번호: 제20610호(이해민·이주희 의원 등 21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상 부담금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안 별표 제97호 신설) - (제안이유·방향)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안 별표 제97호 신설) ※ 본 법률안은 이해민·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 전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의안번호: 제20611호(임문영 의원 등 15인)] ('26.8.1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산업현장 숙련인력의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청년 전문인력의 제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FDE)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18조의2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이를 위해 팔란티어사에서 운영 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 필요 - (제안방향)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616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6.8.18.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공공발주 사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기관장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제53조의4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가능 -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제안방향)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3조의4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20618호(구자근 의원 등 13인)] ('26.8.18.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도급·용역·위탁 계약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는 문제 개선을 위해,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 중 -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제안방향)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 유도를 위해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631호(강명구 의원 등 10인)] ('26.8.1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대형 물류창고 화재의 피해 규모와 진화 곤란성을 고려하여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을 소방시설 기준 강화 시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중 - 하나 최근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기에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637호(박정훈 의원 등 10인)] ('26.8.19. 일부개정 발의) ◆ [요약] 도심지역 가용부지 부족에 대응해 복개된 유수시설 위에 학교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제43조제1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안 제4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의안번호: 제20683호(최수진 의원 등 13인)] ('26.8.21.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과잉 공급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같은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갈음하는 현금납부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행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해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는 상황 ▪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 기여를 위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도록 개정(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20700호(박홍배 의원 등 13인)] ('26.8.21.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야간노동 증가에 따른 수면장애·심뇌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예방조치를 규정하도록 개정(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 (제안이유)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 존재 -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 중 - (제안방향)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709호(김화정 의원 등 12인)] ('26.8.2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미사용 학교시설을 설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안 제2조제3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 - (제안방향)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 촉진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조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712호(이광재 의원 등 12인)] ('26.8.2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개발 이후 지속적 소득원 확보 등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던 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안 제27조의3) -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 - 이에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7조의3)
「수도법」	• [의안번호: 제20726호(김종양 의원 등 10인)] ('26.8.2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률적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권·여가활동권 제한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휴게실·화장실·관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수 부대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8조의3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 -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의3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하천법」	• [의안번호: 제20729호(김종양 의원 등 11인)] ('26.8.24. 일부개정 발의) ◆ [요약] 하천 수변의 파크골프·야영 등 레저 수요 급증에도 화장실·그늘막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무단 오물 배출에 따른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점용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 고려 사항으로 추가하고(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홍수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구조를 갖춘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수질·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33조제10항 신설) - (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 원칙과 경직된 수질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 - 실제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현장에서 화장실, 그늘막 등 최소한의 필수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무단 오물 배출이 오히려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대책과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구조를 갖춘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 역량을 증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20792호(안호영 의원 등 10인)] ('26.8.26. 일부개정 발의) ◆ [요약]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의무를 더 상세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법의 임금 구분지급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 (제안이유·방향)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의안번호: 제20821호(차규근 의원 등 10인)] ('26.8.26.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서울 도심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변경·처분을 금지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 본체부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택지조성을 허용하되 공급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고 녹지 및 생태기능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존 등 개발 원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안 제3조제4호나목 및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활용 가능성이 큰 부지에서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및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거 공간을 조성할 필요 - 다만, 용산공원은 100여 년 동안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서 역사적·문화적·환경적 가치가 크므로, 주택공급을 위한 활용은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유지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 -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대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가치 보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필요 - (제안방향)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며, 녹지·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원·주거·기후·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 조성(안 제3조제4호나목 및 제4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20822호(김승원 의원 등 15인)] ('26.8.26. 일부개정 발의) ◆ [요약] 상생결제제도의 자발적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개정안(안 제7조의4제2항)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 중 - 이때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해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낮다는 지적 - (제안방향)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안 제7조의4제2항)

전영준 연구센터장



02-3441-0793



yjjun@cerik.re.kr

엄근용 연구위원



02-3441-0788



kyeom@cerik.re.kr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동향

종합개요

- 이달 주요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현황을 종합하면, 총 38건의 하위법령·행정규칙 제·개정 및 입법·행정예고가 확인됨.
 - [시행·고시] 하도급거래, 산업안전보건, 정비사업, 주차·건축 기준 등과 관련한 제도가 시행·고시되며 하도급 거래 및 현장 안전관리, 건설·건축 관련 기준 정비가 이루어짐.
 - [입법·행정예고] 근로기준법, 공공주택·주택 관련 법령, 녹색건축 인증 관련 규정 등의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며 건설현장 임금관리, 주택사업 및 친환경 건축 관련 기준 정비가 예고됨.

구 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시행·고시	5	6	1	1	5	-
입법·행정예고	8	6	1	-	1	4

- 주요 하위법령 개정은 ‘△하도급 및 노동·안전 관리체계 강화, △주택·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및 공급 지원, △건설·건축 기준 및 인증 체계 정비’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하도급 및 노동·안전 관리체계 강화] 하도급대금 연동 및 과징금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위험성평가 관련 관리 기준을 강화함. 또한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함.
 - [주택·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및 공급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주택건설실적 인정기준을 정비함. 아울러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됨.
 - [건설·건축 기준 및 인증체계 정비] 자동이송주차장치와 특수건설기계 관련 설비·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녹색건축 인증 분야와 평가·수수료 체계 등을 개편함.
- 이번 달 하위법령 개정 흐름은 하도급 공정화와 노동·안전 관련 관리 기준을 강화·구체화하는 한편, 주택·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비하고 일부 요건을 완화하며, 친환경 건축 및 건설신기술 관련 기준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이에 따라 건설기업 및 관련 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안전보건현황 공시, 임금 비용 구분지급 등 하도급·노동·안전 관련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리모델링 관련 요건,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세제 특례 기한 연장 등 주요 제도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하위 법령명	소관부처	공고(공포)번호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제36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36540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26-38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26-407호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3654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551호
		「주택법 시행령」		제3655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26-972호
		「건축법 시행령」		제2026-1010호
		「주택법 시행령」		제2026-107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26-10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제2026-22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026-224호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477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2026-3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26-4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160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0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14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03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1610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26-1031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026-106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026-1041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2026-1026호
행정 규칙	훈령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제2405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제1974호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제248호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26-13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6-60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제409호
		「특수건설기계 지정」		제2026-420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026-44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026-1061호
	지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제2026-1018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026-1036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026-1032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026-1053호

1 주요 하위법령 개정 현황 : 8월 시행 법령

-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 강화 (8월 11일)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면 기재 사항과 지급보증 면제 기준 등을 정비한 개정임.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를 상향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시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지표와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비교 시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에너지 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준지표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함. 건설하도급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를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하도급 관련 서면의 에너지 비용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신규·갱신 계약의 지급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이와 함께 제재 및 관리 기준도 정비하여,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 별점 경감점수를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함. 또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본 개정령은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은 공포일인 8월 4일부터 시행됨. 개정사항별 적용례도 달리 정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하고, 신고포상금과 별점 경감 규정에도 각각 별도의 적용례를 둬, 이에 따라 계약·외주·공무 부서는 관련 서면과 지급보증 기준 및 적용시점을 개정내용에 맞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주요 에너지 비용 연동 확대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 축소에 따른 하도급 계약·보증 관리체계 정비 필요
배경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축소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주요 내용	• 원사업자 서면 발급 시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지표 및 변동률 산정 기준·비교 시점 기재 •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정비(1건 공사의 잔여대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 위반 횟수 및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 상향(기본산정기준의 50% → 100%) • 타 수급사업자 관련 법 위반 증거를 최초 제출한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시 별점 경감점수 상향(2점 → 2.5점)

-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확정 및 제재 기준 정비 (8월 1일)
 - 기업 등의 안전보건현황 공시^⑥를 의무화하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

로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대상과 공시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개정임. 아울러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 안전보건현황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되,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로 규정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도록 함.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 미반영, 실시 일정·결과 미통지, 기록 미보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공시대상 여부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관리하고, 위험성평가 실시·참여·통지·기록보존 등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7월 28일부터 시행됨.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사업장별 적용 시기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건설업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및 반복 재해·위험성 평가 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비 필요
배경	안전보건 현황 공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기준 구체화
주요 내용	• 안전보건현황 공시대상 기준 마련(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 도급인·공공 건설공사발주자의 근로자 사고 사망 현황 공시 및 미공시 과태료 1천만 원 신설 • 근로자대표 추천 근로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및 최근 1년간 산재(화재·폭발 등) 2회 이상 발생 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미참여·통지·기록보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건설업 공사금액별 단계 시행)

• 「③주택법 시행령」 :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자연재난 발생 시 구조 안전 점검 강화 (8월 4일)

-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통합 검토·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영향 확인 시 건

- 6)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 <출처 : 산업안전포털, 안전보건현황 공시, 제도 개요>
- 7) “연간 건설공사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실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출처 : 산업안전포털,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안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과 입주예정자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개정임. 이를 통해 통합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확인과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 절차를 구체화함.

- 이번 개정으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40명 이하'로 조정하고, 관련 위원회별 위원을 각각 3명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함. 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통합심의 안전과 관련된 각 위원회의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감리 중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 해외체류·장기입원, 자격 취소·정지 등의 사유로 협력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또한,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 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감리자와 현장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는 각각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 및 시공·감리 관련 부서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심의 절차를 확인하고, 자연재난으로 구조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및 입주예정자 현장점검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관련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령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됨.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심의 효율화 및 자연재난 발생 시 구조 안전·현장점검 대응체계 구축 필요
배경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평가·재해영향평가의 통합심의 대상 추가 및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입주예정자 현장점검 관련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주요 내용	•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평가·재해영향평가 추가 •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조정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연재난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절차 구체화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60일 이내 현장점검 • 건축구조기술사 미협력 및 현장점검 미이행 시 각각 1천만원 과태료

• 「^④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 강화 (8월 4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반복법 위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한 개정임. 중대성 정도별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과 감경 요건을 강화하여 그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이번 개정으로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산정 점수에 따라 50% 이상 75% 미만과 40% 이상 50% 미만의 두 구간으로 세분화함. 또한, 법 위반전력 확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5년간 법 위반 조치 횟수와 벌점 누산점수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가중하여, 1회 이상 조치 및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40% 초과 50% 이하부터 4회 이상 조치 및 벌점 7점 이상인 경우 90% 초과 100% 이하까지 적용하도록 함.
-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은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10% 이내로 적용하고, 조사 협력 감경도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제출·진술 등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함.
- 세부 평가 기준상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은 행위유형 평가에서 상(3점)으로 분류됨.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현장관리 절차와 최근 법 위반 및 벌점 이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 고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외주·계약 및 관련 관리 부서는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주요 위반 유형을 사전에 점검하고, 반복 위반 가중 및 감경 기준 변경 사항을 관련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5년간 위반전력 가중 강화에 따른 하도급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배경	부당이득 환수 및 법 위반 억제력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제재 실효성 확보
주요 내용	•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구간을 2단계(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75% 미만)로 세분화 • 법 위반전력 확인 기간 확대(3년 → 5년) 및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기준 정비 • 자진시정 감경을 축소(10% 이내) 및 효과 미제거 시 감경 배제 • 조사부터 심리 종결까지 전 단계 일관 협력 시에 한해 최대 10% 조사 협력 감경 인정 • 부당특약(산업재해·안전보건 비용 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등 주요 위반유형의 중대성 평가기준 정비

• 「**⑤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 하자보수 불필요 공종 명확화 및 업계 부담 완화 (7월 28일)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임. 기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에 구조물 등의 철거, 토석·사토의 운반 및 가시설공사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공종의 특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구조물 등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단순암반절취공사와 모래·자갈채취공사 외에 토석·사토의 운반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명시함. 다만 가시설공사 중 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서 구조물 해체·철거, 토석·사토 운반, 가시설공사 등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적용 여부를 개정된 기준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지침은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되므로, 복합 공종의 경우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하수급인에게 불필요한 하자담보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 기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시는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견적·계약 및 공무 부서는 신규 도급·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개정된 하자담보책임 적용기준이 관련 세부 공종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철거·운반·가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불필요 대상 명확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부담 합리화
배경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공종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상 부담 완화
주요 내용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로 확대 •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대상에 토석·사토의 운반 추가 • 가시설공사를 하자보수 불필요 공사로 명확화(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 제외) • 공종별 특성을 반영한 하자담보책임 적용 제외 범위 명확화 및 발령일부터 시행

2 주요 하위법령 개정 현황 : 입법·행정예고 법령

-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대상 기준 구체화 및 과태료 기준 정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규모·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⁸⁾에 따라,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도급 사업의 업종·규모·기간 및 적용 제외 기준을 구체화한 개정안임. 아울러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 수리 권한을 정비하고 임금구분지급제⁸⁾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를 임금 비용 구분지급 대상으로 규정함. 사업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재해·사고에 따른 긴급복구 등 임금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건조·수리 도급 사업

8)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9.),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도 적용 대상에 포함함.

- 아울러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 수리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임금비용 미구분·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미확인 및 자료 미제출, 임금 미지급 사실 미통보, 임금비용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대상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전월 임금 지급내역 확인·자료제출 등 관련 관리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일부 정비규정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 예정임. 따라서 계약·노무 관련 부서는 공사 규모와 사업기간별 적용 여부,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증빙 절차,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건설공사·조선업 대상 임금비용 구분지급 기준 구체화 및 의무 위반 제재기준 신설
배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위임기준 구체화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주요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건설공사 및 3천만원 이상 국가·지자체 등 발주 공사를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으로 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건조·수리 도급 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 • 도급기간 30일 이내, 긴급복구 등 정당한 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 수리 권한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임 및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 임금비용 미구분·미지급, 지급 여부 미확인·자료 미제출, 미지급 사실 미통보·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 「주택법 시행규칙」 : 소규모정비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주택건설실적 인정 확대

-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이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등록사업자의 실적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건설실적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주택건설실적 인정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함.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함.
-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따라서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 방식과 실적 인정 요건, 사업별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주택건설실적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며, 정비사업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

행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됨.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용검사가 완료된 사업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됨. 이에 따라 사업별 인허가 진행 단계와 실적 인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소규모정비사업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실적 인정 사각지대 해소
배경	신규 사업방식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실적 인정 근거 미비 보완 필요
주요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택건설실적 인정 대상 반영 -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소규모정비 포함)의 시행자로 주택 건설 시 전체 건설호수의 실적 인정 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상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건설 시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 실적으로 인정 - 정비사업은 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분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시행 전 승인·사용검사 완료 사업에도 적용

• 「**㉓법인세법 시행령**」 : 매입임대아파트 추가과세 배제기한 설정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⁹⁾가 취득한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임.
-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요건의 민간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 기한을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만 임대무기간 종료에 따른 등록말소, 기준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기한을 인정함.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추가 과세 배제 적용 취득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 이에 따라 관련 법인은 보유 중인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 기한과 예외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 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 여부와 관련 기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안은 2026년 8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부칙 상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따라서 관련 법인은 임대무기간 종료,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정비사업 진행 등 예외 요건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기한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9)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회사를 의미함.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및 비수도권 미분양 CR리츠 세제지원 1년 연장
배경	법인의 양도소득 추가과세제도 합리화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세제지원 기한 연장
주요 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요건의 민간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기한을 2027년 말까지 설정 • 임대무기기간 종료·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정비사업 진행 주택은 관련 기준일부터 1년의 예외기한 적용 •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추가과세 배제기한 1년 연장(2026년 말 → 2027년 말)

• 「^④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공공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허용

-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 외에 별도의 해체공사감리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임. 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 공사 감리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해짐.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인용 조문도 정비함.
- 이에 따라 관련 공공 개발사업에서는 기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설사업관리와 해체공사감리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사업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적용 대상 여부와 관리자 요청 및 허가권자의 지정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라도 시행 당시 해체공사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진행 중인 대상 사업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된 지정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 일원화 허용 및 행정 비효율 해소
배경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설사업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 업무 중복 및 비효율 개선 필요
주요 내용	• 공공주택·도시·산단·민간임대 지구 사업의 기존 건축물 해체 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허용 • 지역 감리자 명부 미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관리자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인용 조문 정비 •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 전 해체허가 신청·신고 건 중 감리자 미지정 사업에도 적용

- 「^⑩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 맞춤형서비스 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신설
 -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¹⁰⁾의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임. 수임 반려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 중지 사업의 약정 해제·해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¹¹⁾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수료·사업정보 관리 등 현행 업무체계를 정비함.
 - 이번 개정으로 맞춤형서비스 요청서 반려 기준 중 총공사비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컨설팅 업무 대상도 총공사비 2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함. 또한 예산·사업부지·민원 등의 문제로 약정 체결 후 설계 미발주 기간 또는 설계 용역 정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 아울러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의 정의¹²⁾와 지정·운용 근거를 신설함. 이와 함께 맞춤형서비스 운영체제도 정비하여, 기획·설계관리, 심의 대행, 시공관리 등 업무 완료 시마다 수수료를 고지하고, 약정 해지 시에는 단위 업무별 구성비와 시공관리 공정률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함. 또한 약정·사업정보 관리를 기존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술용역 일시 정지 및 기술자 배치 변경 관련 절차도 정비함.
 - 이에 따라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수요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변경된 수임 기준과 장기 중지 사업의 약정 해지 요건을 비롯하여,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지정·운용에 따른 발주자 안전관리 지원체계,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산정·고지 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약정·사업정보 관리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 처리 기준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훈령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맞춤형서비스 수임·해지 처리 기준 현실화 및 발주자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신설
배경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서비스 업무절차 개선 및 발주자 안전 관리 지원체계 보완 필요
주요 내용	•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 200억 원 미만으로 맞춤형서비스 요청서 반려 기준 조정 • 설계 미발주·용역 정지 1년 이상 등 장기 중지 사업의 수요기관 협의 없는 약정 해지 기준 신설 • 약정 해지 시 맞춤형서비스 단위 업무별 구성비 및 시공 공정률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주자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정의 및 지정·운용 근거 마련

10)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수요기관 중 전문인력이 없거나 발주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조사·용역·심의 등과 사업발주·계약·공사관리·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 <출처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리플렛(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11) “안전관리 전문가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정, 사업추진 소과정에 참여하여 발주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획·설계·시공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 <출처 : 조달청 보도자료(2023.5.10), “조달청-한국시설안전협회, 공공시설사업 안전 강화 위해 ‘맞손’”>

12)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3 전체 하위법령 개정 현황 : 시행 및 예고 법령 종합 요약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및 위탁 서면 필수 기재사항(기준 지표, 기준·비교 시점 등) 신설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 근거 마련 -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잔여대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정비 -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의 법 위반 입증 증거자료 최초 제출 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 위반 횟수 및 피해자 수 고려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 상향(기본 산정기준의 50% → 100%)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경감 점수 확대(2점 → 2.5점)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정의 규정 명문화	'26.8.11. (과징금 가중 규정은 '26.8.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및 공시 세부 항목(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 등) 규정 -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 시 과태료(1,000만 원) 부과기준 신설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및 국제·외국기관에 대한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적용 제외 규정 마련 -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용자 해당 시 해촉 사유 신설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화재·폭발·붕괴 재해가 최근 1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근로자대표 미참여, 일정·결과 미알림, 결과 미기록·보존에 대한 세부 과태료(50만~1,000만 원) 부과 기준 신설	'26.8.1. (개선계획 규정 '26.7.28.,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50인 이상 '27.1.1. / 50인 미만 '28.1.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당연직 중앙노동감독관 범위(고용노동부 관련 부서 3~7급, 국장, 지방청장 등) 및 임명직 자격(교육 이수, 사법경찰관 6개월 경력 등) 규정 - 시·도 지방노동감독관 자격(지방공무원 4~7급 중 교육 이수자), 임면 14일 전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절차 마련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권한 시·도지사 위임 및 위임 철회(시정명령 불이행, 중대재해 발생 등) 기준 수립 -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및 사건 관계인의 본인 진술·제출서류 열람·복사 신청권 신설 - 업무시간 외 방문 등 사업장 감독 사전안내 요건 및 경영상 해고·중대산업재해 등 중앙노동감독관 보고의무 규정 - 위임사무 지도·감독(개선·시정 요구) 및 직무이행명령 불이행 시 행정·재정상 조치(대집행, 보조금 축소 등) 체계 마련 -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최대 1,000만 원), 출석·보고 불응 등 위반행위별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종전 「근로감독관규정」 폐지 및 타 법령상 '근로감독관' 용어 일괄 정비	입법예고 중 ('26.7.24. 공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도급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3천만 원 이상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1척당 120억 원 이상 선박 건조·수리) 기준 신설	입법예고 중 ('26.8.20.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도급기간 30일 이내, 재해 긴급복구공사 등 임금비용 구분지급 적용 제외 사유 명시 •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 수리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 상습체불사업주 보조·지원 제한 관련 소명 기회 제공 업무 시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근거 마련 •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및 중복 규정 정비 • 임금비용 구분지급 위반(미구분, 미지급), 지급 확인·자료제출 위반, 용도 외 사용(최대 1,000만 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건축법 시행령」	•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대지 조경 의무 적용 제외 • 산불 발생 시 변전소 조경으로 인한 화재 확산 및 대규모 정전 피해 방지 목적 반영	'26.7.2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철도·고속도로 분리, 별개 사용승인·검사 등 구분관리 필요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신설 • 특별정비예정구역 결합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동의) 규정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행위 제한 시 지자체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및 사전 고시 절차 마련 •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마련, 토지등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 등 승인 절차 신설 • 서면동의서 검인 및 전자서명동의서 위·변조 방지 확인 절차(20일 이내 처리) 신설 • 선도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단 구성 등 목적 동일·유사 사항에 대한 동의 인정 특례 요건 및 동의 철회 기준 마련 •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주민설명회 개최, 신탁업자 전자조달 공개모집,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 규정	'26.8.4.
	「주택법 시행령」	•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교육환경·성능위주설계·재해영향평가)에 따른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 조정(총 위원 수 40명 이하, 위원회별 위촉 3명 이상) 및 분과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 공동위원회 회의 개의 시 안건 관련 위원회의 위원 각 1명 이상 출석 의무화 • 자연재난으로 구조 영향 발생 시 감리업무 협력 건축구조기술사 기준(구조설계 담당 기술사 원칙, 사망·실종 시 입주예정자 1/3 동의 추천 등) 마련 • 자연재난 구조 영향 확인 주택의 입주예정자 현장점검 절차(요청 후 60일 내 실시,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점검 병행 가능) 신설 • 건축구조기술사 미협력 감리자 및 현장점검 요청 불응 사업주체 대상 과태료(1,000만 원) 부과기준 신설	'26.8.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 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결정기준 신설 • 총사업비, 토지·건축물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 분양가격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입법예고 중 ('26.7.24. 공고)
	「건축법 시행령」	•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가정형 : 단독·공동주택, 일반형	입법예고 중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종교시설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시 부속용도 인정 및 기존 등록 시설 대상 3년간 본래 용도 인정 특례 마련 - 국방·군사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국가정보원 안보 업무시설'을 신설하여 설계공모, 인증·평가 등 적용 배제 근거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상 사업지에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역' 추가	('26.7.31. 공고)
	「주택법 시행령」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단지 전체 : 전체 75% → 70% 이상 및 동별 50% 이상 / 동 단독 : 75% → 70% 이상)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입법예고 중 ('26.8.18. 공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 허용 - 시행 전 해체 허가 신청·신고 후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경과조치 마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인용 조문 번호(제21조제6항제1호) 정비	입법예고 중 ('26.8.18. 공고)
	「법인세법 시행령」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한정, 임대무기기간 미종료 등은 말소일 등으로부터 1년 기한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 1년 연장(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입법예고 중 ('26.8.7. 공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취득 지방(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27.12.31.)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처분 기한 단축·조정(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 2년) - 수도권 밖 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27.12.31.) '26.8.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계약분 종전 규정(3년) 적용 경과조치 마련	입법예고 중 ('26.8.7. 공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신설(공시의무자는 대표자 확인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홈페이지에 게재) - 공시 내용 오류·누락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및 사실 확인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예외 사유(미워축, 참여 거부, 출장·휴가 등) 구체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용어 관련 조문 문구 정비	'26.8.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 노동감독관증 규격·양식·기재사항 명시, 발급대상 등록 및 퇴직 시 반납 절차 규정 - 공정성 의심 시 사업장 감독·신고사건 기피(사용자등 신청) 및 회피 절차	입법예고 중 ('26.7.24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신설 - 현장조사지시서 및 검진지시서 법정 서식 마련 - 사업장 감독 종류(정기·수시·특별)별 대상·실시요건 규정 및 사업장 방문 점검 원칙 명시 - 감독 결과 사용자·근로자대표 대상 설명 의무 및 시정 내용 게시·증빙 제출 요구 근거 신설 - 관할 중복 또는 원거리 거주 시 사건 이송 절차 및 재산고·악성 신고사건 위원회 심의·조사중단 근거 마련 -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사전협의(14일 전)·의견 미반영 사유서·재협의 및 위임 권한 철회 등 서식 규정 - 시·도지사 위임사무 수행 실적평가(합동/별도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근거 명문화 - 지방노동감독관의 불리한 처우 및 부당 지시·간섭에 대한 장관 조치 요청 절차·서식 신설 - 전국노동감독협의회(25인 이내) 및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20인 이내) 구성·운영 체계 확립 - 종전 「근로감독관 규칙」 폐지 및 타 법령상 '근로감독관' 용어 일괄 정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에 필요한 전월 임금지급 증명자료, 근로자 명부, 월별보험료 자료 등 범위 구체화 - 도급인의 전용 지정계좌 임금비용 지급(자료 제출 후 5일 이내) 및 수급인의 근로자 계좌 이체(5일 이내) 기한·절차 규정 - 전자적 지급방식 활용 시 임금비용 지급 간주 및 확인자료 제출 면제 근거 마련 - 계좌 개설 불가 시 직접 지급 승인 절차 및 수급인 임금 미지급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통보 절차·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관련 조항 및 서식(별지 제21호서식) 삭제	입법예고 중 (‘26.8.20.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 설치 기계식주차장 설비·안전 기준(전면공지 너비 10m·길이 11m 이상, 차로 및 출입구 높이 2.3m 이상, 출입구 너비 3m 이상 등) 신설 - 자동이송주차장치 진입로 너비(단방향 3m, 양방향 6m 이상)에 따른 정류장 확보 간주 규정 및 내부 방향전환장치 설치 시 차로 대체 기준 마련 - 승강기식 주차장치 승하차장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작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입력을 위한 대장 서식(자주식·기계식) 신설 및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자동이송주차장치 사용검사 시 현장설치 평면도 제출 및 검사 후 지자체 대상 '설치 현황서' 제출 절차 신설	'26.7.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용 -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임주자모집공고 전 변경승인 포함) 및 의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타법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인용 조문 문구 정비	'26.7.29.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 서버실·전산실 면적 제외 기준 신설 -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화장실을 신축공동주택 등의 필요 환기량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 허용 - 먹는물용 급수관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및 수도용 자재·제품 사용 요건 명확화 등 급수설비 기준 정비	'26.8.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및 동의철회서 법정 서식 신설 - 특별정비에정구역 결합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동의서 등 관련 서식 정비 -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언 관련 첨부서류 및 절차 구체화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연계 시스템(건축법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택지정보체계 등) 규정	'26.8.4.
	「주택법 시행규칙」	-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로 규정 -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또는 초래할 우려)하는 내력구조부 결함 확인 시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명확화	'26.8.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당기순손실 미발생 등) 적용 시점을 '지구지정 제안일' 기준으로 명확화 -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용지의 공급가격을 종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 - 종교시설(종교법인 소유), 유치원, 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 대상 해당 시설 용지의 수익계약 공급 근거 및 공급 면적 기준(종전 소유 면적 범위 내) 신설	입법예고 중 ('26.8.6. 공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전문분야 개편(종전 7개 분야 →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 인프라, 친환경 계획과 관리 4개 분야) -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인증기관 상근 심사전문인력 및 인증심사단 구성 요건 정비(분야별 1명 이상 포함 총 5명 이상) - 전문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 득점 시 '특성화 등급' 부여 근거 신설 및 전문교육 이수자의 설계·시공 참여 시 가산점 부여 근거 명시 -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 신청 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확대 -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의 녹색건축 인증 선택적 취득 근거 마련 - 인증명판 재질·크기 자율화 및 인증서·예비인증서 진위 확인을 위한 QR 코드 삽입 등 서식 정비	입법예고 중 ('26.8.13.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법원 등 압류촉탁에 따른 등록원부 압류등록(부기) 및 해제 절차 규정, 전산정보처리조직 처리 업무에 압류등록 추가 - 건설기계 검사원(책임검사원·검사원) 자격 인정기준에 자동차정비 등 유사분야 자격증(건설기계정비·설비, 농업기계, 자동차정비) 소지자 확대 - 정비기능사 대체인력 자격요건 완화(실무경력 5년→3년, 교육시간 140시간→84시간) - 음주 및 약물(마약 등) 투여 후 조종 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개별 기준 분리 신설 및 처분 기준 정비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내 대여사업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표기란 및 구조변경 사항란 신설 등 서식 정비	입법예고 중 ('26.8.13.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실적 인정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가 -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완료 사업 포함 적용)	입법예고 중 (‘26.8.14. 공고)
행정 규칙	훈령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 맞춤형서비스 수임 반례 기준 총공사비 상향(100억 원 미만 → 200억 원 미만) 및 컨설팅 업무 대상(200억 원 미만) 현실화 -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운영 근거 신설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용어 정비 - 설계 미발주 또는 용역 정지 1년 이상 경과 등 장기 중지 사업에 대한 협의 없는 직권 약정 해지 사유 구체화 - 단위업무(기획·설계, 심의, 시공) 완료 시마다 수수료 전산입력·통보 및 공사예산액 5% 이상 증감 시 수수료 조정 기준 정비 - 관급자재심의위원회 심의 품목 합계 50억 원 미만 시 검사관을 위원장으로 지정 및 감독관의 간사 임무 명시 - 내부정보화시스템(ED)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변경 및 전자파일 CD 제출 의무화 폐지(지정 매체 제출로 정비)	행정예고 중 (‘26.8.20. 공고)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	- 고소작업차의 특수건설기계 추가 지정에 따른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최대작업높이, 정격하중) 표시방법 신설 - 대형고소작업차의 기종별 작업장치(불길이, 단수, 붐의 최대각도, 최대작업높이·반경, 선회속도 등) 표시방법 및 관련 서식(별지 제2호서식) 정비	'26.8.11.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규정 신설 - 명예감독관 위촉 시 본인, 추천인, 해당 사업장 사업주 대상 위촉사실 통보 절차 명문화 - 명예감독관 추천 시 제출 서류로 증명사진 외 디지털 사진 파일 대체 인정 및 추천 가능 인원 제한 규정 삭제 - 임기만료 시 사임 의사 미표명 및 해촉 사유 미해당 시 연임 간주 규정 정비(후임자 추천 관련 규정 삭제) - 추천서식 내 '사업주 의견 청취 절차' 삭제, '추천 유형' 및 '사업장 내/외' 구분 항목 신설, '직종'·'노조원 여부' 기재란 삭제 등 관련 서식(별지 제1호~제4호) 개정	'26.8.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중대성 정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부과기준금액 상향 및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구간 2단계 세분화 - 법 위반전력 확인 기간 확대(3년 → 5년) 및 반복 법 위반 시 기본산정 기준 가중 한도 상향(1회 최대 50%, 위반횟수·벌점에 따라 최대 100%) - 피해 수급사업자 수(50개 이상 70개 미만 10% 이내, 70개 이상 20% 이내)에 따른 가중 기준 명문화 - 자진시정 감경을 축소(10% 이내, 위반행위 효과 미제거 시 감경 배제) 및 조사·심의 전(全) 단계 협조(10% 이내), 약식 심의 수락(10% 이내) 등 감경 규정 정비 - 자본잠식·부채비율·적자 등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최	'26.8.4.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총 부과과징금 감액(50% 이내/초과) 및 면제 요건 구체화 -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세부평가 기준표(행위유형 0.3, 부당성 0.3, 피해 발생범위 0.2, 피해규모·정도 0.2) 정비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10,700원 결정 - 월 환산액 2,236,30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고시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배제	'26.8.5 공고 (적용기간 : '27.1.1.~'27.12.3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적용 대상 명확화 및 확대 - 하자보수 불필요 대상 공사에 구조물 등의 '철거하는 공사' 명시적 추가 - 하자보수 불필요 대상에 '토석·사토의 운반' 및 '가시설공사(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 제외)' 구체적 명시	'26.7.28.
	「특수건설기계 지정」	'대형고소작업차'(정격하중 0.5톤 이상, 자체중량 40톤 초과, 굴절식 붐 구조의 자주식)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추가 지정 - 대형고소작업차의 규격 표시방법(최대작업높이, 정격하중) 및 등록번호표 기호·문자('26서XXXX') 신설 - 대형고소작업차 조종면허 요건 규정(도로운행 시 제1종 대형면허, 작업 시 기종기 조종사 면허) - 대형고소작업차에 대한 관리법규 및 안전기준 적용 규정('기종기' 및 '터널 용고소작업차' 준용)	'26.8.11.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표기를 '토지등소유자별'에서 '토지등 소유자 유형별'로 개정 -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주택단지별 대지면적 등 고려 5인 이상 25인 이하) 및 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 준비·추진을 위한 협약(협약등) 체결 절차·근거 명문화 -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에 대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철회 인원을 제외한 잔여 동의자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인 경우) 및 근거 정비 -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및 철회 서식을 상위 시행규칙 법정 서식(별지 제8호 및 별지 제6호의4)으로 연계 정비(종전 자체 서식 제1호~제4호 삭제) - 통합정비 협의서 서식 번호 변경(별지 제5호 → 별지 제1호) 및 표준서식 현행화	'26.8.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 용도별로 산재되어 있던 개별 인증기준(종전 별표 1~7)을 신축·기존·리모델링 건축물 중심(별표 1)으로 통합 일원화 4대 전문분야(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 친환경 계획과 관리) 체계로 평가항목 재편 및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 고도화 - 인증 신청 건축물의 필수항목 점수 의무 취득 규정 삭제(제3조제6항 삭제)를 통한 인증 부담 완화 - 전문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 득점 시 부여하는 '특성화 등급(탄소중립, 건강, 생태공간)' 세부 산정기준(별표 8, 10) 신설 - 주거·비주거용 인증/예비인증 수수료 산출체계(기존·리모델링 인건비	행정예고 중 ('26.8.13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지침		70% 적용), 규모·세대수별 할증계수 및 심사 단계별 환불비율(별표 12) 정비 • 공동주택성능등급 심사기준 및 표시항목(별표 13) 정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일반 매입임대주택 대상 주택에 바닥난방·개별욕실 등을 갖춘 주거용 다중생활시설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방식으로 매입 절차를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시 일반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의 기숙사형 주택 공급 전환 허용 •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 허용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유효기간 규정(종전 훈령 부칙 제4조) 삭제	행정예고 중 (‘26.7.30. 공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표기를 '토지등소유자별'에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개정 •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주택단지별 안배 5인 이상 25인 이하) 및 구역 지정 전 협약 체결 근거 명문화 •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에 대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정비 •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및 철회 확인 서식을 상위 시행규칙 법정 서식으로 연계 정비(종전 자체 서식 제1호~제4호 삭제) • 통합정비 협의서 서식 번호 변경(별지 제5호 → 별지 제1호) 및 표준서식 현행화	행정예고 중 (‘26.7.31. 공고)
	「도시개발업무지침」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의 국토교통부 보고 시기를 '협약 체결 승인 후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와 일치 • 개발계획 변경 시 기초현황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개발계획서 내용 생략 허용 등 절차 간소화 • 방음시설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상업·업무시설 등 저소음 영향 용지 우선 배치 또는 완충공간 확보 검토기준 신설 •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 내 미매각된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분양주택용지 외 '타 유형 임대주택건설용지'로의 변경·공급 근거 마련 • 기반시설용지 매입기관의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 경과 전이라도 용도 변경 요청 허용 및 매각차익 발생 시 지역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 공공 기여 근거 신설 • 도시개발사업 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의 직접 시공 근거 마련	행정예고 중 (‘26.8.6. 공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을 공공시행자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 시행 시 민간참여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사업 형태가 유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제20조~제26조) 준용 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행정예고 중 (‘26.8.7. 공고)